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-1736호

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 (2011.10.20.)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70호(2017.03.02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97호(2021.02.25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4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) 변경된 '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'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3년 11월 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가. 공람기간: 2023년 11월 9일 ~ 2023년 11월 23일

나. 공람장소: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(☎02-820-9776), 사당4동주민센터(☎02-585-0050),
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587-1066)

다. 공람대상: 토지등소유자, 조합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

다. 의견서 제출: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(☎02-820-9776),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587-1066)

라. 사업시행계획의 요지

- 1) 정비사업의 종류/명칭 : 주택재건축사업 /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)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
- 3) 구역면적 : 20,265.0㎡
- 4) 사업시행자 :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강성수)
- 5) 사업시행자 주소 : 동작구 사당로16길36 2층
- 6)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0개월
- 7)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관계도서 참조)
 - 아파트 11개동(지하4층/지상12층), 5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마. 관계 서류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)

바. 유의사항

- 본 공고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되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
-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이내에 관계 서류에 내용에 대하여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(☎02-820-9776) 또는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02-587-1066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, 공람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(부서)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-1790호

사당동 257-27 및 사당동 318-99 일대 행위제한 열람공고

1.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 예정인 동작구 사당동 257-27 및 318-99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코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시행합니다.
2. 해당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및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9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가. 행위제한 내용

1) 대상지

연번	위치	면적(㎡)	필지수	비 고
1	동작구 사당동 257-27 일대	18,149.6㎡	127필지	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(도시정비형 재개발)
2	동작구 사당동 318-99 일대	8,683.4㎡	47필지	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(도시정비형 재개발)

2) 제한사유 :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(정비예정구역)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전 비 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

3) 제한행위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

4) 제한기간 :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

※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까지

5) 예외사항

-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·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-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
-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(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용도변경 등)

나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다. 열람장소 :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, 도시계획과

라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)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(☎02-820-1984) 및 도시계획과 (☎02-820-919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